# 취업관리요령

# 제 1 장 근 태

#### 제 1 조【근무시간】

취업규칙(이하 '규칙'이라 한다)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각과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정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.

- 1. 평일근무시간은 ○시부터 ○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○시까지로 한다.
- 2. 휴식시간은 ○시부터 ○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휴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

## 제 2 조 【지각 및 조퇴】

- ① 지각은 출근시각으로부터 ○시간까지의 출근을 말한다.
- ② 종무시각 전의 퇴근은 조퇴로 취급하고 1일 근무시간이 2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한다.

# 제 3 조 【구속된 자의 근태취급】

- ① 사원이 관계기관에 연행 또는 구속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건으로써 무혐의가 확정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업소장의 인정에 따라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이외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속된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한다.
- ④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발령은 기소일로 한다.
- ⑤ 회사와 관계없는 민·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당국에 소환당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휴가로 인정한다.

## 제 4 조 【무보직자의 근태취급】

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무보직이 된 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.

#### 제 5 조【특별휴가】

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요하는 자는 사실을 증명할 말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증빙서를 첨부할 수 없는 휴가는 상사의 인정으로 대치할 수 있으나 3일 이상의 질병휴가에 있어서는 치료기간을 예정한 회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 6 조 【결근중의 휴일】

- ① 결근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간주한다. 다만, 월차휴가 실시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② 특별휴가기간중의 휴일도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.

#### 제7조【연월차휴가】

- ① 취업규칙 제45조·제46조의 개근자라 함은 휴가계산기간 중 유(무)결, 병결, 정직 또는 휴직이 없는 자를 말하며, 9할 이상의 출근자라 함은 계산기간 중 총근무일수의 9할 이상의 출근자를 말한다.
- ② 2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휴가계산예시
- 1. 개근자: 11일 + (근속년수(만) 1)일 = 연차휴가일수
- 2. 9할 출근자: 9일 + (근속년수(만) 1)일 = 연차휴가일수

## 제 8 조【출근부정리】

- ① 출근부는 매일 아침 근태담당자가 이를 점검자 본인의 성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유를 계출 또는 명령사항에 의하여 출근부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사유표시는 공휴, 현장출근, 출장, 공상, 유결, 무결, 병결, 월차휴가, 연차휴가, 특별휴가, 정직, 지각, 조퇴, 휴직, 교육, 파견, 본사부, 사업소부와 같이 한다.

#### 제 9 조【근태상황의 점검】

근태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별로 매분기별 1회 이상 출퇴근, 이석상황을 점검한다.

#### 제10조【근태연월차휴가카드】

근태담당부서에서는 근태연월차휴가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이동시 해당전입사업소로 송부하여 야 한다.

# 제11조【근태계 제출】

각종 근태계제출은 소속장을 경유하여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정으로 본 인이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장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.

# 제2장 출장

## 제12조【사업소장의 출장】

사업소장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집행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【임무이행확인】

- ① 출장자는 행선지사업소의 임무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출장은 복명서로 대치할 수 있다.
- ② 본사는 각부담당과에, 사업소는 서무담당과에 출장자등록부를 비치, 기록하고 등록인으로 출장증명서를 확인한다.

## 제14조【출장증명서의 반납】

출장자는 귀임 즉시 출장증명서를 근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태담당자는 그 내용을 확인, 출장명령대장에 기록하고 귀임표시를 하여야 한다.

# 제3장 상 벌

#### 제15조【우수사원, 우수사업소, 대외인사 포상】

- ① 사장 또는 사업소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우수사원을 포상할 수 있다. 다만, 정기포상의 경우 연간 현인원의 1%를 초과하여 포상할 수 없다.
- ② 회사는 전사업소의 업무실적을 본사에서 채점하고 그 성적에 따라 우수사업소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한다.
- ③ 회사는 외부인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.
- 1. 회사의 주요 공사와 그에 수반하는 업무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끼쳤거나,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에 커다란 공적이 있는 자
- 2. 회사의 제반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공헌한 자

#### 제16조【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포상】

재직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이 회사에 3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
#### 제17조【포상내신】

전2조의 포상내신은 수여예정일 ○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공적조서
- 2. 사업소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(직원의 경우에 한한다)
- 3. 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서열을 명시할 것

## 제 18조【포 상】

- ① 포상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.
- ② 포상은 필요에 따라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1. 표창장
- 2. 상 금
- 3. 포상휴가

#### 제19조【인사위원회의 심의】

포상은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# 제20조【훈계 및 경고】

- ① 경미한 내용으로서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나 본인에게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훈계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으며 훈계시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할 수 있다.
- ③ 훈계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처리하고, 경고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할 수 있다.

#### 제21조【증거서류】

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의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채집하여야 한다.

#### 제22조【당사자출석】

- 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고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훈계로 처리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정당국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.
- ③ 비위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출장으로 취급하고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본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재심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석에 필요한 기간 유급휴가를 준다.

#### 제23조【심 의】

- ① 인사위원회는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심의한다.
-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.
- ③ 당사자를 심문한 요지는 간사가 기록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.
- ④ 당사자 심문이 종료되면 당사자를 퇴장시키고 당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의 종결여부를 결정한 후 표결 또는 연기조치한다.

# 제24조【표 결】

- ① 비위사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위원장이 주문을 낭독한다.
- ②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비위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.

## 제25조【징계처분집행】

- ① 징계처분의 집행은 징계처분장을 교부하는 동시에 직원자격기록카드에 기록하고 인사명령으로 발령한 후 즉시 징계처분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건의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재심의결과 원처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정정하는 절차를 취한다.

#### 제26조【항 고】

- ① 징계처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.
- 1. 징계절차가 제사규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심히 부당할 때
- 2. 징계절차에 허위나 정실이 개재하여 공정성을 결여한 때
- 3. 원처분을 파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
- 4. 기타 이에 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
- ② 항고서는 신청인이 속하는 소속장에게 제출하며 소속장은 ○일 이내에 항고이유에 대한 의 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
# 제27조【일반보고】

- ① 각 부서 또는 사업소에서 발생한 비위사건은 즉시 그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소속직원이 대외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된 때에는 즉시 인적사항과 사유, 수사기관명 및 상황을 보고하고 사건의 진전에 따라 중간보고 내지 결과를 보고한다.

#### 제28조【권고사직】

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임을 결의함에 있어서 본인이 사직원을 특정일까지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- 1. 징계처분장에는 권고사직원 제출기일을 지정하여 교부하고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.
- 2. 권고사직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제26조에 규정된 항고절차에 따른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할 수 없다.
- 3.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거나 항고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권고사직처분은 실효되며 원처분에 따라 지체없이 지정기일부로 징계해임처리한다.

## 제29조【대장비치】

일체의 비위사건은 비위자연명부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그 중 특히 징계로 처리된 사항은 징계록에 기재하여 비치한다.

# 부 칙

## 제 1 조【시행일】

이 요령은 ○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